

군산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6월 1일

군산시 규칙 제 507호

**군산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

군산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은 폐지한
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6월 1일

군산시 규칙 제 508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누수지 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지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는 “관경300밀리미터이상 :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경100밀리미터이상 : 4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같은조제2항제2호는 “관경100밀리미터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경100밀리미터미만(급수관으로서계량기이전관) : 2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같은조제2항제3호및제4호는 삭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p> <p>1.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시장은 제1호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②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p> <p>1. <u>관경 300밀리미터 이상 : 5만원 상당의 물품</u></p> <p>2. <u>관경 100밀리미터 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u></p> <p>3. <u>관경 50밀리미터 이상 : 2만원 상당의 물품</u></p> <p>4. <u>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1만원 상당의 물품</u></p>	<p>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p> <p>1.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u>누수지 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지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u></p> <p>2. 삭제</p> <p>②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p> <p>1. <u>관경 100밀리미터 이상 : 4만원 상당의 균산특산품(농,수산물)</u></p> <p>2. <u>관경 100밀리미터 미만(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2만원 상당의 균산특산품(농,수산물)</u></p> <p>3. <삭제></p> <p>4. <삭제></p>

군산시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자문(협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2년 6월 1일

군산시 **훈령** 제 290호

군산시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자문(협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 도시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및 자문(협의)에 관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경관위원회 및 도시디자인실무위원회 기능) ① 도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도시디자인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경관법」 및 군산시 경관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서면심의 포함) 및 자문 한다.

② 위원장(위원회·실무위원회)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3조(심의 및 자문(협의) 대상)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17조 제1항, 제2항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항의 범위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1”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협의) 대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사업 추진부서 및 시장이 필요하다 요청한 사항

② 기 경관심의를 득한 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시 경관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 시설물 표준 디자인 적용 및 기타 위원회(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 군산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에서 경관 관련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심의를 득한 것으로 한다.

제4조(경관 심의 및 자문(협의) 신청서 제출) ① 제4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

항의 경관심의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관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자료작성은 별첨 1의 형식에 따른다.

③ 경관담당 부서는 제출된 심의신청 관련 서류의 미비 및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보완 완료일을 심의 신청일로 본다.

제5조(경관 심의 및 자문(협의) 신청서 제출시기) 제5조에 의거하여 경관 심의 및 자문(협의) 신청서 제출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2. 도시건축물 외관디자인의 사전자문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자문을 거쳐 계획 설계 완료 후 본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3.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우 주문기관의 장이 주문방식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실시설계 착수 전
4. 야간경관조명은 건축물계획과 병행이 곤란할 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

제6조(심의결과 반영) 경관심의를 의뢰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를 경관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심의 수당)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 개최 시 자료검토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협의) 대상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 (시청, 주민센터, 소방서, 우체국, 경찰서등) 나. 학교(초중고대학교) 다. 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연면적 300㎡이하 위원자문 또는 자제협의 (경관담당부서)
복지시설	가. 경기장 나. 체육관 다. 휴게소 라. 의료·복지시설 마. 복지회관(마을회관) 바. 광장·공원·놀이터 등	
문화 홍보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문화예술회관(공연장) 마. 전시관 바. 기념관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 소각장 나. 재활용 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2. 도시기반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고가철로 포함) 다. 입체교차로,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라. 도로, 보행로, 자전거 도로 등	공사금액 3억이하 위원자문 또는 자제협의 (경관담당부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높이 2m, 길이 20m 이상의 석축·옹벽 다. 방음벽 라. 맨홀	
그 밖의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 라. 전주 및 통신주 마.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분전반, 교통신호제어기등) 바. 공사장 가림막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교통시설물	가. 가로등, 보안등 나. 휨스 다. 블라드 라. 자전거보관대 마. 버스 택시 승차대 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사. 교통신호등 아. 버스안내표 지 자. 방향유도사인 차. 교통안내 전광판	공사금액 3억이하 위원자문 또는 자제협의 (경관담당부서) ※표준디자인 설치시 심의 면제
문화관광 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안내표지판 다. 동상·기념비·탑 라. 대외적 홍보관	

가로녹지 시설	가. 분수대 나. 가로수 보호덮개 다. 휴지통 라. 도로화분	공공자금액 3억이하 위원자문 또는 자체협의 (경관담당부서)
휴게시설	가. 벤치 나. 매점 다. 파고라 라. 가판대 등	
친수공간 시설	하천 · 도심 · 친수 공간 등	공자금액 3억이하 위원자문 또는 자체협의 (경관담당부서)

4. 공공매체·예술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공공미술	가. 벽화 나. 조각 다. 슈퍼그래픽 라. 미디어아트 마. 공사장 가림막	공자금액 3억이하 위원자문 또는 자체협의 (경관담당부서)
광고매체	가. 게시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CI 등 행정시각매체 디자인	
조형물	가. 조형물 나. 랜드마크 다. 동상 라. 기념탑	

5.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대상

분 류	대 상 의 종 류	비 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대상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근린생활시설 라. 상업시설 마. 경관계획 바. 기타시설 사. 공공부문계획	디자인 협의(경관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 참조 칼라, 형태, 재질

[별지 1호]

경관위원회 및 도시디자인 실무위원회 심의·지문(협의)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부서	부서명		
계획내용	규모	(전체면적, 총연장)	가로 세로 높이
	용도		
	구조		
	신청내역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계자	주소		
	성명		
	사무소명		전화
신청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디자인계획(안) 15부

[별첨 1]

심의·자문(협의)신청 자료 및 내용

1. 심의(자문)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심의 도서

○ 형 식 : A4, A3규격 횡철

○ 내 용

1) 사업개요 및 심의 상정 사유

2)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시

3) 재상정 안건의 경우 : 종전 심의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 Overlap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기타 필요한 자료

3. 제안 설명용 컴퓨터 파일

○ 상기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 심의 신청서 작성시 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 참조

4. 심의도서 작성예시

○ 표지

제○○차 군산시 경관위원회 및 도시디자인실무위원회 (HY헤드라인 12)

안건명(HY견고딕 35)

- 사업위치(HY견명조 20) -

심의일자(HY견고딕 20)

기관, 소관부서명(HY견고딕 20)

○ 내지

1. 사업개요 안건명(HY견고딕 35)

(자료내용 : 상기 심의도서 내용 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군산시 공고 제2012-1243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6 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현재 시행 중인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여 훈령에서 규칙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안 제3조)

-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나. 사전협의 등(안 제6조)

- 공무국외여행방침을 수립할 때
-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 참가,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가 협의 단계시

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안 제7조 및 별표2)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

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심사기준 : 별표 2

라.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안 제13조)

-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참고사항을 출국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

마. 공무국외여행자 연락유지 등(안 제14조)

- 업무수행중 특수사정 발생 또는 지정 기일내에 목적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허가권자 보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현지규범·관습·공중도덕 등 존중

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안 제15조 및 별지3)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
-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

사.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공무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활용토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운영

아. 동 규칙의 제정으로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

3. 의견제출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 452-815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 2.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공무원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제15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때
-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때
- 3.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때

제2장 공무국외여행 허가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 장(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의 장은 긴급한 때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20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여행자 수칙
3. 항공운임증명서(G.T.R 등)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적용하며,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을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여행계획의 변경신청)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여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시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방문시에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여행출발 40일 전까지 전라북도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7조(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에서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 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시에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할 때(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시 산하단체 직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여행경비는 「군산시여비조례」에 따라 산출 지급하고,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에 필요할 때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관리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외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연락유지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하는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군산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의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공무국외여행방침

- (주관부서)
- 방침결정
 - 부서장 포함 : 상급자
 - 부서장 이하 : 부서장
 - 허가부서 등과 사전 협의
 - 심사 및 허가기준 내부 자율 점검 및 검토 의견 제시

⇒

**서울행정시스템
공무여행허기(심사) 신청**

- (주관부서 ⇒ 허가부서)
-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 주관부서의 장 전결
- 《첨부서류》**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2. 여행자 수칙
 3. 항공운임증명서(G.T.R)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허가 승인**

- (허가부서)
- 심사방법
 - 심사대상 :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 비대상 : 허가부서의 장 (부서 검토 의견 분석)
 - 심사내용
 - 여행목적 및 필요성,
 - 여행자, 여행지
 - 여행기간, 여행경비 등
 - 허가승인
 - 심사 후 전결규정에 따라 허가

⇒

허가여부 통보

- (허가부서 ⇒ 주관부서)
- 여행 허가사항 통보

⇒

출국 및 업무수행

- (주관부서)
- 여행자 소양교육 실시
 - 여행 출발사항을 허가 부서에 통보(당일)
 - 보안서약서제출 (출국 3일전)
 - 현지활동(연락유지 등)
 - 특수한 사정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이행
 - 해외여행자 수칙 준수

⇒

귀 국

- (주관부서)
- 귀국보고서 제출
 -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 후 귀국후 30일 이내
 - 허가권자에게 보고
 - 전자문서시스템 게시관 해외연수자료실에 게시
 - 부서 소관 해외 사례 규정 업무 반영
 - 다른 부서 소관 해외 사례 해당부서 통보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 별지 제1호서식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200 . . ~ 200 .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계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운 공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 별지 제2호서식 >

공무국외여행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일간)까지 직무연수로 국
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취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
하여 국외여행기간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일반목적수행)
- 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 등)
- 다. 형법 제99조(공무상 비밀누설 등)
- 라. 군형법 제44조(일반이적)
- 마. 군정법 제47조(명령위반)
- 바. 군령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별지 제3호서식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 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군산시 공고 제2012-1285호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와 같은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 의료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안 제2조)
 - 과태료 부과·징수 : 군산시장
- 과태료 부과대상(안 제3조)
 - 과태료 부과대상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4조)

- 처분의 사전통지 등(안 제5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6조)
-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안 제7조)
- 강제징수(안 제8조)
-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관리(안 제9조)
- 과태료의 귀속(안 제10조)
 - 과태료는 군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370/ 군산시 수송동로 58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 063-460-3232, FAX : 063-463-147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보건행정계

(063-460-32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경우
2. 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범원통보) ① 제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세부기준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법 제21조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지 제1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제5조 관련)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				

군 산 시 장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1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군산시 보건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제5조 관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제6조 관련)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귀하께서는 「지역보건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업소명 (시설명)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 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귀하의 과태료는 지역 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며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일부 인		년 월 일
군산시장		

과태료 납부서
(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 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 인		
군산시장 귀하		

영수증필통지서
(시통보용)

제 호	회계 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 인		
군산시장 귀하		

영 수 증
(개인보관용)

제 호	회계 연도	년도
위반사항 : 지역보건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시설명)	
과태료 금액		원
관	항	목
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6조 관련)

문서번호 :

받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제6조 관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번호		당초고지일자		
취소(변경) 내 역	당초고지금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 유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제7조 관련)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과 관련됩니다.
2. 「지역보건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지일자		⑤과태료금액	
	⑥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1부.
 3.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끝.

군 산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제9조 관련)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의 제기일	법원 통보일

군산시 공고 제2012-1305호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6 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악취 및 해충피해 등 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도 준칙(안)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개정

2.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안 제3조 별표1)

- 돼지·닭·개 500미터 이내⇒돼지 2,000미터 이내, 닭·개 500미터 이내
- 오리·양·사슴 300미터 이내⇒오리 500미터 이내, 양·사슴 300미터 이내
- 소·젓소·말 200미터 이내⇒소·젓소 500미터 이내, 말 100미터 이내

3.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농정과(전화 : 450-4392, FAX : 452-816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가축위생담당 (전화 450-43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과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업체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90이상 동의하되 당해 축사의 인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받은 경우. 단, 축사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08.01>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군산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축산폐수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 사육지의 주변연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 제 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 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6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다만 신축 및 증축은 금지한다.

부 칙(2011.8.1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제3조제2항)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 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 2,000미터 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담·젖소·오라개 : 500미터 이내 - 양·사슴 : 300미터 이내 - 말 : 100미터 이내

군산시 공고 제2012-1312호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 조례 제정
-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호 사업 및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지원 대상사업
 - 자동차의 고급화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 낡은 차량의 대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 (안 제4조)

-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중 버스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함.

○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안 제5조)

-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실시
-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시는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손익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함.
-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 금액으로 산정함.

○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등 (안 제6조)

○ 재정 지원 결정 (안 제8조)

-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건설교통국장, 군산경찰서 교통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함.
 - 시의원,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 공인회계사,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9조)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위원회 심의사항
 - 제정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 누설금지 및 품위손상행위 금지하도록 함.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서기는 교통관리계장으로 함
- 출석위원에게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함
-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조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재정지원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시 홈페이지 공개사항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역
 -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
-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안 제25조)
 -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포상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고 :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과 반대의견 및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450-6240, FAX:450-6404)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권태환 (전화 063-450-62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318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7명) 반영
- 2012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반영

- 정원의 총수 변경 : 1,344명 ⇒ 1,351명 (+7명)
 - 일반직 정원 변경 : 1,111명 → 1,117명 (+6명)
 - 별정직 정원 변경 : 14명 → 15명 (+1명)

- 조정 내역

- 행정6급 (+ 2명)
- 시설(지적)9급 (+ 1명)
- 시설(건축)9급 (+ 1명)
- 공업직(전기)9급 (+ 1명)
- 공업직(일반기계)9급 (+ 1명)
- 별정7급 (+ 1명)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393,659천원 정도
 - 56,237천원(연간) × 7명 = 393,659천원
 - ※ 인건비 기준 : 행정안전부 2012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44명”을 “1,351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1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 1,326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5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35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44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319명</p> <p>2.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 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344</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111</td> <td colspan="5">-</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4</td> <td>1</td> <td>1</td> <td>2</td> <td></td> </tr> <tr> <td>5급</td> <td>73</td> <td>33</td> <td>3</td> <td>3</td> <td>7</td> <td>27</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1,029</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4</td> <td colspan="5">-</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14</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4</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4</td> <td></td> <td></td> <td>3</td> <td>1</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32</td> <td colspan="5">-</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9</td> <td></td> <td></td> <td>29</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계</td> <td>182</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44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1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29	-					별정직 계	14	-					6급 상당 이하 계	14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p>제2조(정원의 총수) 총수) -----1,351명 -----.</p> <p>1. ----- 1,326명</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읍면 동</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351</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5">-</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117</td> <td colspan="5">-</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4</td> <td>1</td> <td>1</td> <td>2</td> <td></td> </tr> <tr> <td>5급</td> <td>73</td> <td>33</td> <td>3</td> <td>3</td> <td>7</td> <td>27</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1,035</td> <td colspan="5">-</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15</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4</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4</td> <td></td> <td></td> <td>3</td> <td>1</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32</td> <td colspan="5">-</td> </tr> <tr> <td>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9</td> <td></td> <td></td> <td>29</td> <td></td> <td></td> </tr> <tr> <td>기능직계</td> <td>182</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5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35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44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1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29	-																																																																																																																																																																																																																																													
별정직 계	14	-																																																																																																																																																																																																																																													
6급 상당 이하 계	14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5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35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7명) 반영
-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3]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반영
- 정원의 총수 변경 : 1,344명 ⇒ 1,351명 (+7명)

나. 비용추계 결과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393,659천원 정도
- 56,237천원(연간) × 7명 = 393,659천원
- ※ 인건비 기준 : 행정안전부 2012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 2012년 총액인건비(92,905백만원) 내 지출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장식
연락처	(063) 450 - 423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국고보조							
세 출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인 건 비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재원 조달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자체 수입	소 계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지방세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 ▶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2-1319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7명) 반영
- 2012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반영

- 정원의 총수 변경 : 1,344명 ⇒ 1,351명 (+7명)

· 일반직 정원 변경 : 1,111명 → 1,117명 (+6명)

· 별정직 정원 변경 : 14명 → 15명 (+1명)

- 조정 내역

- 행정6급 (+ 2명), 시설(지적)9급 (+ 1명)

- 시설(건축)9급 (+ 1명), 공업직(전기)9급 (+ 1명)

- 공업직(일반기계)9급 (+ 1명), 별정7급 (+ 1명)

○ 5급 직렬조정

- 토지정보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서수면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6급 직렬 조정

- 성산면·나포면 산업계장 :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 옥서면 민원계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옥서면 주민생활계장 : 지방행정주사·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 옥서면 산업계장 :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술체육사업소, 문화청소년과의 기구 및 기구의 장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급별	직렬별										
총괄		1351	727	25	94	41	163	13	118	170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17	618	18	89	1	107	12	104	168	
3 급	소 계	1	1								
	행정	1	1								
4 급	소 계	8	4	1	1		2				
	행정	3	1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5 급	소 계	73	33	3	3		7	1	10	16	
	행정	16	14				2				
	해양수산	1	1								
	의무	1			1						
	시설	2	2								
	보건·의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별정	3		3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	3	3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환경	1	1								
	행정·통신	1	1								
	보·환·공	1	1								
	행·농·보	1									1
	행·농·녹	1								1	
	행·농·환	1								1	
	행·보·간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시·환	1					1				
	행·시·공	2									2
	행·환·녹	1					1				
	행·농·해수	1	1								
	행·사회·시	4									4
	행·사회·보	2									2
	행·사회·의기	1									1
행·농·공	1								1		

	행·농·간	2						2		
	행·보·의기	1							1	
	행·시·사서	2							2	
	행·시·의기	1							1	
	행·시·통	1							1	
	행·농·시·해수	2					1	1		
	행·농·공·환	1						1		
	행·농·간·녹	1						1		
	행·농·보·환	1						1		
	행·사회·농·공	1						1		
6 급	소 계	259	154	6	16		27	3	30	23
	행정	75	51	3			8			1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전산	1	1							
	공업	2					2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보건진료	6			6					
	시설	18	16				2			
	공업·시설	3	1				2			
	농업·시설	1	1							
	보건·식품	1	1							
	보건·간호	1			1					
	해양수산·환경	1	1							
	녹지·시설	2	2							
	전산·통신	1	1							
	시설·전산	1	1							
	농업·수의	2	2							
	행정·시설	22	19				3			
	행정·공업	5	2				2			1
	행정·농업	17	3					1	11	2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별정	4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사서	3					3			
	행정·세무	9	9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녹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31	15						9	7	
행·사회·해수·시	1							1		
행정·환경	3	2					1			
공업·환경	4	2				2				
보건·환경	1	1								
보·간·의기	7			7						
보·환·공	2	1				1				

	시·환·공	2				2				
	행·농·시	3					1	2		
	행·농·해수	1	1							
	행·농·해수·시	1						1		
	행·세무·농·녹	2						2		
	행·보·간	1			1					
	행·보·환	1	1							
	행·전산·통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환·시	1	1							
	행·사·보·간	1	1							
	행·농·시·별	1		1						
7 급	소 계	349	205	5	25	1	35	4	29	45
	행정	137	86	4	1		14	1	5	26
	세무	2	2							
	사회복지	18						1	8	9
	전산	1	1							
	사서	5					5			
	공업	9	2				7			
	농업	7	7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6	6							
	보건	8	2		5		1			
	간호	6			5		1			
	보건진료	5			5					
	환경	6	5				1			
	시설	40	35	1			4			
	방송통신	2	2							
	식품위생	1	1							
	보건·식품	1	1							
	행정·시설	12	5					1	6	
	행정·농업	13	1			1		1	10	
	행정·별정	2	2							
	행정·사회	20	15							5
	행정·세무	23	18							5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전산	3	3							
	행정·환경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	1	1								
공업·환경	3	2				1				
보·간·의기	9			9						
공·환·보	1					1				
8 급	소 계	274	148	3	37		25	2	17	42
	행정	103	57	2			8	1	2	33
	세무	4	4							
	사회복지	9	1						2	6

	전산	3	2	1					
	사서	3				3			
	공업	10	6			4			
	녹지	3	3						
	농업	1	1						
	해양수산	6	6						
	보건	17	5		12				
	의료기술	9			9				
	간호	2			2				
	보건진료	7			7				
	환경	3	3						
	시설	34	26			7	1		
	방송통신	2	2						
	세무·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1	6				5		
	행정·농업	10					1	7	2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	14	13						1
	행정·세무	9	9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3			3				
	전산·통신	1	1						
	공업·환경	2				2			
	간호·의기	3			3				
9급	소 계	153	73		7	11	2	18	42
	행정	48	15			2	1	9	21
	세무	10	10						
	사회복지	46	16				1	8	21
	전산	2	2						
	사서	5				5			
	공업	5	3			2			
	농업	2	1					1	
	녹지	2	2						
	보건	8	1		6	1			
	의료기술	1			1				
	환경	2	2						
	시설	21	20			1			
	방송통신	1	1						
연구직	계	4			3	1			
연구사	소 계	4			3	1			
	환경연구사	1			1				
	학예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32			32				
지도관	소 계	3			3				
	농·생지도관	3			3				

지도사	소 계	29				29				
	농촌지도	29				29				
기능직	계	182	99	7	5	3	51	1	14	2
6급	소 계	7	6						1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운전	1	1							
	사무	1	1							
	선박항해	2	1						1	
7급	소 계	29	18		1		8		2	
	통신	1	1							
	전기	1					1			
	기계	6	2				4			
	선박기관	2	1						1	
	조무	4	2				2			
	운전	7	6		1					
	사무	5	4				1			
선박항해	3	2						1		
8급	소 계	40	24	1	2	1	11		1	
	통신	2	2							
	건축	1	1							
	전기	3	1				2			
	기계	8	4				4			
	선박항해	3	2						1	
	선박기관	2	2							
	조무	2	1				1			
	전화상담	1	1							
	운전	12	9		1	1	1			
	열관리	3			1		2			
	위생	1	1							
사무	2		1			1				
9급	소 계	106	51	6	2	2	32	1	10	2
	통신	2	1	1						
	전기	7	3				4			
	기계	11	5	1			5			
	선박항해	1							1	
	조무	7	2			1	4			
	전화상담	2	2							
	농림	1				1				
	운전	9	4	2	1		2			
	열관리	6	2				4			
	화공	1					1			
	위생	4	1				3			
	사무	41	31	2	1		7			
	사육	2					2			
사무·조무	12						1	9	2	
별정직	계	15	9			2	4			
6급	소 계	3	3							

	홍보연구원	1	1							
	비서	1	1							
	문화재연구원	1	1							
	소 계	12	6			2	4			
7급	농기계교육교관	2				2				
	보건위생감시원	2	2							
	공기업회계원	1					1			
	수영강사	2					2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박물관운영요원	1	1							
	체육진흥연구원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총괄	1344	729	25	94	41	154	13	118	170	총괄	1351	727	25	94	41	163	13	118	17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11	620	18	89	1	99	12	104	168	일반직 계	1117	618	18	89	1	107	12	104	168
3급 소계	(생략)									3급 소계	(현행과 같음)								
3급 행정										3급 행정									
4급 소계	(생략)									4급 소계	(현행과 같음)								
4급 행정										4급 행정									
5급 소계	(생략)									5급 소계	(현행과 같음)								
5급 시설	3	3								5급 시설	2	2							
5급 행정시설	7	6				1				5급 행정시설	8	7			1				
6급 소계	257	154	6	16		25	3	30	23	6급 소계	259	154	6	16	27	3	30	23	
6급 행정	75	52	3			7			13	6급 행정	75	51	3		8			13	
6급 행정시설	21	19				2				6급 행정시설	22	19			3				
6급 행정농업	18	3					11	12	2	6급 행정농업	17	3				1	11	2	
6급 행정사회	31	14						10	7	6급 행정사회	31	15					9	7	
6급 행정해수	2	1						1		6급 행정해수	1	1						1	
6급 행·농·녹	2							2		6급 행·농·녹	2							2	
7급 소계	349	208	5	25	1	32	4	29	45	7급 소계	349	205	5	25	1	35	4	29	45
7급 행정	136	88	4	1		11	1	5	26	7급 행정	137	86	4	1	14	1	5	26	
7급 시설	41	36	1			4				7급 시설	40	35	1		4				
8급 소계	274	149	3	37		24	2	17	42	8급 소계	274	148	3	37	25	2	17	42	
8급 행정	104	59	2			7	1	2	33	8급 행정	103	57	2		8	1	2	33	
8급 행정사회	13	12							1	8급 행정사회	14	13						1	
9급 소계	149	71		7		9	2	18	42	9급 소계	153	73		7	11	2	18	42	
9급 행정	48	15				2	1	9	21	9급 행정	48	15			2	1	9	21	
9급 공업	3	3								9급 공업	5	3			2				
9급 시설	19	18				1				9급 시설	21	20			1				
9급 (생략)	(생략)									9급 (생략)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정직 계		<u>14</u>	9			2	<u>3</u>			별정직 계		<u>15</u>	9			2	<u>4</u>		
6급		(생략)								6급		(현행과 같음)							
7급	소 계	<u>11</u>	6			2	<u>3</u>			7급	소 계	<u>12</u>	6			2	<u>4</u>		
		(생략)										(현행과 같음)							
	박물관 운영요원	1	1								박물관 운영요원	1	1						
	체육진흥연구원	—					—				체육진흥연구원	<u>1</u>					<u>1</u>		

군산시 공고 제2012-1320호

공 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7명) 반영
- 2012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역할에 맞는 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복지국
- 시설관리사업소 ⇒ 예술체육사업소
- 체육시설관리과 ⇒ 체육진흥과
- 문화체육과 ⇒ 문화청소년과
- 투자지원과(산업인력양성계) ⇒ 투자지원과(인력양성일자리계)
- 지역경제과(전략산업계) ⇒ 지역경제과(전략산업1계)
- 체육시설관리과(시설계) ⇒ 체육진흥과(체육시설계)

○ 신설 및 폐지

- 예술의전당관리과 신설
- 예술의전당관리과(시설운영계) 신설
- 예술의전당관리과(공연기획계) 신설
- 문화회관관리과 폐지
- 문화회관관리과(관리계 및 문학관계) 폐지
 - * 문학관계 업무는 문화청소년과 문화정책계로 이관
- 지역경제과(전략산업2계) 신설
- 문화청소년과(삶의질정책계) 신설
- 여성아동복지과(출산다문화계) 신설
- 일자리창출 및 산업인력 양성 업무 통합
 - * 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계) + 투자지원과(산업인력양성계) ⇒ 투자지원과(인력양성일자리계)

○ 소속 변경

- 지역경제과(취업노사계) ⇒ 투자지원과(취업노사계)
- 문화체육과(체육진흥계) ⇒ 체육진흥과(체육진흥계)
- 문화체육과(예술진흥계) ⇒ 예술의전당관리과(예술진흥계)
- 여성아동복지과(청소년계) ⇒ 문화청소년과(청소년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치행정국, 향만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을
“자치행정국, 향만경제국, **주민복지국**,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제2호중 “주요업무계획·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주요업무계획·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으로 한다.

제7조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
원순환과”를 “(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청소년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지방문화, 예술, 체육진흥, 근대문화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문화, **삶의질 향상**, 근대문화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 **청소년
업무**”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시설관리사업소 가.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나. 독서진흥
관련 업무 및 도서관 운영 다. 문화예술의 보급 라. 철새 및 철새도래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예술체육사업소 가. 예술의전당관리
및 문화예술의 보급 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다. 독서진흥 관련
업무 및 도서관 운영 라. 철새 및 철새도래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체육사업소, 문화청소년과의 기구 및 기구의 장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가목중“시설관리사업소”를 “예술체육사업소”로 한다.

②군산시품질행정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예술체육사업소장”으로 한다.

③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④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예술체육사업소장”으로 한다.

⑤군산시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⑥군산시의열시민에대한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⑦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⑧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⑨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⑪군산시의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⑫군산시의립예술단진흥기금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⑬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⑭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⑮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⑯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⑰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⑱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⑲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⑳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㉑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㉒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㉓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㉔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㉕군산시 사업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예술체육사업소”로 한다.

㉖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시설관리사업소장”를 “예술체육사업소장”로 한다.

㉗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㉘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㉙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㉚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㉛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체육시설관리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수도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하 수 과	
예술체육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군산시 지곡동 286-9
	체육진흥과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시립도서관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철새생태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항만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을 둔다.</p> <p>(생략)</p> <p>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주요업무계획·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국제협력 관련 업무</u></p> <p>(생략)</p> <p>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p> <p>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u>문화체육과</u>,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p> <p>② 주민생활지원국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분야</p> <p>2.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p> <p>3. 여성정책수립 및 여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여성복지상담소 운영</p> <p>4. <u>지방문화, 예술, 체육진흥, 근대문화 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u></p> <p>(생략)</p>	<p>제3조(국의 설치) ----- ----- <u>주민복지국</u> -----.</p> <p>(현행과같음)</p> <p>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p> <p>① (현행과같음)</p> <p>② (현행과같음)</p> <p>1. (현행과같음)</p> <p>2. <u>주요업무계획·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u></p> <p>(현행과같음)</p> <p>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p> <p>① <u>주민복지국</u>----- ----- <u>문화청소년과</u>, -----.</p> <p>② <u>주민복지국장</u>----- -----.</p> <p>1.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분야</p> <p>2.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p> <p>3. 여성정책수립 및 여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여성복지상담소 운영</p> <p>4. <u>지방문화, 삶의질 향상, 근대문화 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 청소년업무</u></p> <p>(현행과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 수도사업소</p> <p>가. (생 략)</p> <p>나. (생 략)</p> <p>다. (생 략)</p> <p>라. (생 략)</p> <p>마. (생 략)</p> <p>2. 시설관리사업소</p> <p>가. 공공체육시설의 유지관리</p> <p>나. 독서진흥 관련 업무 및 도서관 운영</p> <p>다. 문화예술의 보급</p> <p>라. 철새 및 철새도래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13 1332 764 1991"> <thead> <tr> <th colspan="2">사 업 소 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 도 사업소</td> <td>수 도 과</td> <td>군산시 시청로 17</td> </tr> <tr> <td>하 수 과</td> <td>(조춘동)</td> </tr> <tr> <td rowspan="4">시설관리 사업소</td> <td>체육시설 관리과</td> <td>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td> </tr> <tr> <td>시립도서관 관리과</td> <td>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td> </tr> <tr> <td>문화회관 관리과</td> <td>군산시 대학로 308 (나운동)</td> </tr> <tr> <td>철새생태 관리과</td> <td>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td> </tr> <tr> <td colspan="2">차량등록사업소</td> <td>군산시 시청로 17 (조춘동)</td> </tr> </tbody> </table>	사 업 소 명		위 치	수 도 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하 수 과	(조춘동)	시설관리 사업소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문화회관 관리과	군산시 대학로 308 (나운동)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시청로 17 (조춘동)	<p>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 수도사업소</p> <p>가. (현행과같음)</p> <p>나. (현행과같음)</p> <p>다. (현행과같음)</p> <p>라. (현행과같음)</p> <p>마. (현행과같음)</p> <p>2. <u>예술체육사업소</u></p> <p>가. <u>예술의전당 관리 및 문화예술의 보급</u></p> <p>나. <u>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의 유지관리</u></p> <p>다. <u>독서진흥 관련 업무 및 도서관 운영</u></p> <p>라. 철새 및 철새도래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764 1332 1434 1991"> <thead> <tr> <th colspan="2">사 업 소 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 도 사업소</td> <td>수 도 과</td> <td>군산시 시청로 17</td> </tr> <tr> <td>하 수 과</td> <td>(조춘동)</td> </tr> <tr> <td rowspan="4"><u>예술체육 사업소</u></td> <td><u>예술의전당 관리과</u></td> <td><u>군산시 지곡동 286-9</u></td> </tr> <tr> <td><u>체육진흥과</u></td> <td>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td> </tr> <tr> <td><u>시립도서관 관리과</u></td> <td>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td> </tr> <tr> <td>철새생태 관리과</td> <td>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td> </tr> <tr> <td colspan="2"><u>차량등록사업소</u></td> <td>군산시 시청로 17 (조춘동)</td> </tr> </tbody> </table>	사 업 소 명		위 치	수 도 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하 수 과	(조춘동)	<u>예술체육 사업소</u>	<u>예술의전당 관리과</u>	<u>군산시 지곡동 286-9</u>	<u>체육진흥과</u>	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	<u>시립도서관 관리과</u>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u>차량등록사업소</u>		군산시 시청로 17 (조춘동)
사 업 소 명		위 치																																							
수 도 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하 수 과	(조춘동)																																							
시설관리 사업소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문화회관 관리과	군산시 대학로 308 (나운동)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시청로 17 (조춘동)																																							
사 업 소 명		위 치																																							
수 도 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하 수 과	(조춘동)																																							
<u>예술체육 사업소</u>	<u>예술의전당 관리과</u>	<u>군산시 지곡동 286-9</u>																																							
	<u>체육진흥과</u>	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																																							
	<u>시립도서관 관리과</u>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u>차량등록사업소</u>		군산시 시청로 17 (조춘동)																																							

군산시 공고 제2012-1321호

공 고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7명) 반영
- 2012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직렬조정

- 토지정보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서수면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역할에 맞는 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복지국
- 시설관리사업소 ⇒ 예술체육사업소
- 체육시설관리과 ⇒ 체육진흥과
- 문화체육과 ⇒ 문화청소년과
- 투자지원과(산업인력양성계) ⇒ 투자지원과(인력양성일자리계)
- 지역경제과(전략산업계) ⇒ 지역경제과(전략산업1계)
- 체육시설관리과(시설계) ⇒ 체육진흥과(체육시설계)

○ 신설 및 폐지

- 예술의전당관리과 신설
- 예술의전당관리과(시설운영계) 신설
- 예술의전당관리과(공연기획계) 신설
- 문화회관관리과 폐지
- 문화회관관리과(관리계 및 문학관계) 폐지
 - * 문학관계 업무는 문화청소년과 문화정책계로 이관
- 지역경제과(전략산업2계) 신설
- 문화청소년과(삶의질정책계) 신설
- 여성아동복지과(출산다문화계) 신설
- 일자리창출 및 산업인력 양성 업무 통합
 - * 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계) + 투자지원과(산업인력양성계) ⇒ 투자지원과(인력양성일자리계)

○ 소속 변경

- 지역경제과(취업노사계) ⇒ 투자지원과(취업노사계)
- 문화체육과(체육진흥계) ⇒ 체육진흥과(체육진흥계)
- 문화체육과(예술진흥계) ⇒ 예술의전당관리과(예술진흥계)
- 여성아동복지과(청소년계) ⇒ 문화청소년과(청소년계)

○ 분장사무 조정

- 기획예산과(대외협력계) 외국인 업무 삭제
- 지역경제과(전략산업1계, 전략산업2계) 업무분장 조정
- 투자지원과(인력양성일자리계) 업무분장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계) 출산업무 삭제
- 여성아동복지과(여성정책계) 다문화 업무 삭제
- 여성아동복지과(출산다문화계) 업무 신설
- 문화청소년과(삶의질정책계) 업무 신설
- 예술의전당관리과(시설운영계, 공연기획계) 업무 신설
- 문화회관관리과 업무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 주민생활지원국 제9조(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을 “제4절 주민복지국 제9조(주민복지국) 문화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으로 한다.

제10조(건설교통국)중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별표1,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술체육사업소, 문화청소년과의 기구 및 기구의 장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획예산 과 장	대외협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의회 운영지원 ○ 의회자료 제출 및 협의에 관한사항 ○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 의회운영 제도개선 연구등 ○ 의정비 관련업무 ○ 남북교류 업무추진 ○ 명예시민 업무 ○ 국내자매도시 관련업무 ○ 재경향우회 관련업무 ○ NGO 관리
지역경제 과 장	지역경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물가조사 및 안정지도 단속 ○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 운영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 ○ 저축 장려업무 추진 ○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 산학연관 업무추진 ○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략산업1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 ○ 전략산업 종합 D/B 구축·운영 ○ 전략산업 시책 발굴 기획 및 사업화 ○ 주요기관 인적네트워크 구축·관리 ○ 전략산업 기업 종합지원(R&D, 마케팅 등) ○ 전략산업 관련기업 R&D 기술애로 해소지원 ○ 전략산업 전문인력양성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 산·학·연·관 공동협력사업 지원 ○ 국가 R&D공모사업 발굴 기획 및 유치 ○ R&D기관 육성·협력기반 구축 지원 ○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성과 확산
	전략산업2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관련사업 육성 지원 ○ 자동차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 ○ 자동차산업 마케팅 육성 지원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조선산업 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 ○ 자동차 관련 행사 추진 ○ 지역특화 전략산업 추진 ○ 자동차산업 유관기관 협의 및 지원 ○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물류지원센터 시설관리
	경제통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및 기본 통계 정비 ○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인구주택 총조사 ○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및 경제통계 기획조정 ○ 주요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분석 ○ 경기분석 및 경제관련 지표 조사 ○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 인구동태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의 실시 ○ 농업 총조사 및 총사업체, 광공업 고용구조 등 통계조사 ○ 행정지도제작 및 보급
	상 정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개설허가 및 관리 ○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 계량업무 지도 감독 ○ 상거래 질서 확립 ○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 공산품 품질관리 시책 종합기획 조정 ○ 공산품 품질관리 및 불법공산품 유통 단속 ○ 공산품 사전검사 위반상품 단속 및 조치 ○ 가격 표시업소 지정 ○ 공예품 개발 육성 ○ 위조상품 유통 단속 ○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 전화권유, 방문, 통신판매 신고처리
	에 너 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수급대책 및 조정 ○ 석유류에 대한 업무 전반 ○ 에너지 절약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연탄 품질관리 지도 ○ 연탄 수송업자 및 판매소 지도 관리 ○ 고지대 및 도서지역 영세민 연료 업무 ○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 허가 ○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허가 ○ 도시가스 시설 공사계획 승인 ○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시설 자금융자 관련 업무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신고 ○ LPG 사용 시설 체적판매제 시행 추진 ○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 기타 가스 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명령 ○ 전기공사업체 면허신청 등에 관한 업무 ○ 도서 전화사업 계획수립 및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 ○ 기타 전기관계 업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투자지원 과 장	투자유치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투자지원위원회 운영 ○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업무 ○ 국제통상 및 무역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기업도시관련 지원업무 ○ 기업세제 지원 ○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관리
	기업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소 예산·회계 기획 및 집행 ○ 산업단지관련 민원 처리 ○ 수출동향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 산업단지 홍보 및 안내 ○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협조 ○ 기타 공업진흥에 관한 사항 및 염제조 허가 ○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기획 조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업무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업무 ○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업무 ○ 상공단체 육성지원 및 지도 감독 ○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 군장산업입주기업협의회 업무지원
	산단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입 및 각종 보상 ○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분양 ○ 산업단지내 공사발주 및 설계 ○ 산업단지내 공사감독 및 보고 ○ 지방산업단지내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사업계획 승인 ○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 ○ 지방산업단지내 공장 등의 양도 및 임대 등의 ○ 농공단지 운영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 관리업무 및 지도감독 ○ 공장가동 상황과악 및 제조업체 실태조사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 공장이전 명령위반에 대한 조치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도점검
	취업노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 근로자 복지향상 ○ 노사정협의회 운영 ○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 ○ 취업박람회 관련업무 ○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노동쟁의 지도 ○ 근로복지관 운영지도 감독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지도 ○ 공공일자리아사업 추진(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 경제산업정보시스템 운영
	인력양성일자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총괄기획 및 추진 ○ 지역일자리 발굴·육성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자립형지역일자리) ○ 사회적기업 육성 ○ 청년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컨설팅(창업 등) ○ 고용촉진 훈련사업 ○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 기능인력 수급대책 ○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에 관한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복지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 3.1절, 현충일행사 ○ 부랑인시설업무 ○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 의회 업무 관련 전반 ○ 공익근무요원 관리 ○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 ○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여성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시설물 유지 관리 ○ 일반 사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 여성단체 지도 육성 ○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 관리 ○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 국내 결혼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 여성아동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육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 수립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 보육시설 평가인증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집 ○ 보육시설 예산·결산 승인 ○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 ○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보육시설 행정쟁송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 아동학대 예방사업 ○ 결식우려아동 급식(방학중, 학기중 공휴일) ○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실종아동 보호 ○ 요보호아동 복지시설 입소 ○ 입양가정 지원 (일반, 장애아)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 요보호아동 결연 ○ 퇴소아동 자립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설치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드림스타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 통합사례관리 ○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관리
	여성교육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상담 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 성·가정폭력 보호시설지원 및 상담지원 ○ 피해자치료 전담의료 기관업무 및 응급키트관리 ○ 요보호 여성관리 및 보호 ○ 가출부랑 여성의 예방 및 선도 ○ 기지촌 지역 여성보호 및 교육 ○ 여성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여성 기술 기능 교육 ○ 취미 교실 운영 ○ 여성 사회 교육 ○ 교육 기자재 관리 ○ 교육성과의 분석 평가 ○ 교육 수료자 사후 관리 ○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납 ○ 가사도우미 운영 ○ 아동여성 보호 연대운영 ○ 여성교육장 시설물 유지 관리 ○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변경, 폐지신고 ○ 보호시설 입·퇴소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시설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원 ○ 성매매예방 교육 ○ 공유재산 관리(월명동 18-14) ○ 여성 취업지원사업 운영 ○ 기타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출산다문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 출산장려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 출산장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출산장려 홍보,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 출산장려 T/F팀 구성 및 운영 ○ 출산장려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산 대책관련 시책 개발추진 및 홍보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구성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출산 정책에 대한 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관련 축제 및 행사 지원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 및 관리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현황 통계 구축 조사 ○ 그밖에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문화청소년 과 장	문화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 종합 기획 조정 ○ 지방문화의 진흥 ○ 문화재 분야 기획업무 ○ 지방문화단체의 지원 및 문화 행사 지원 ○ 지방문화원 지원 및 지도감독 ○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문화재 정비보수 및 보수공사 ○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 관리 ○ 향교 일요학교 운영 및 지원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 춘추계 석전대제 및 유도회 ○ 향토 유적관리 및 발굴조사 ○ 출판사 및 인쇄소 신고, 지도감독 ○ 시사편찬 ○ 군산시 역사자료 ○ 공연 및 공연장 지도감독 ○ 천연기념물 관련업무 ○ 문화 영상업무 ○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 ○ 문화복지 증진 시설물 건립추진 ○ 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신설) ○ 문학관자료의 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 ○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 채만식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삶의질정책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 종합 계획수립 및 총괄운영 ○ 삶의 질 향상 기획·평가 및 시책 발굴 추진 ○ 삶의 질 정책 TF팀 구성 운영 ○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 주민밀착형 소규모 문화시설 확충 ○ 문화복지 주요시책 발굴 ○ 슬로시티 관련 기획·조정·평가 ○ 슬로시티 중장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 슬로산업 관련 자원화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슬로시티 연맹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운영지표 개발 ○ 슬로시티 체험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의견 수립 ○ 주민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슬로시티 지정 지역브랜드화 작업 및 인증시범사업
	근대문화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 근대문화중심도시 사업추진 관리 ○ 근대역사 건축물 정비지구사업
	박물관관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추진 ○ 전시물 구입에 관한 사항 ○ 박물관 전시 기획에 관한 사항 ○ 기타 박물관 운영에 속하는 사항
	청소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 시설신고 처리 및 시설위탁 운영 관리 ○ 청소년 단체 지도관리 및 지도감독 ○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 ○ 각종 청소년 복지 행사 개최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 ○ 비행 청소년 선도 보호 ○ 청소년 복지 진흥업무 전반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 과태료 처분 및 행정소송 처리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운영 ○ 기타 청소년 보호 위원회 권한중 위임되는 사항 ○ 수련시설 허가관련 신청접수·협의·검토·허가 변경허가 ○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신고 및 폐지제한 ○ 수련시설등록관련 신청접수·협의·검토·등록·변경등록·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기록·통보 ○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 명령 ○ 수련시설의 보험 가입 ○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및 감독

[예술체육사업소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예술의전당 관리과장	시설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예산, 회계, 계약, 경리, 용도와 재산 관리 ○ 지출,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 물품관리, 공공요금, 공공성경비, 일용인부 관리 ○ 주차장 운영,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전기, 소방,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냉방, 난방, 급수, 기계 시설관리 ○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리 ○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복무지도 총괄
	공연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전시 기획 및 교육 총괄 ○ 홈페이지 제작, 관리 ○ 공연홍보 및 마케팅 ○ 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시설 사용료 징수, 매표업무 등 제반수입 관리 ○ 공연장, 전시관 대관 및 사용허가 업무 ○ 무대시설 및 전시실 등 시설관리 ○ 무대기계 운용 및 관리 ○ 무대조명 운용 및 장비 ○ 무대음향 운용 및 장비
	예술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술의 진흥 ○ 지방예술 진흥업무 기획 ○ 지방 예술단체 및 동호회 지원 ○ 각종 예술행사 지원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 ○ 예총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 예술관람 시설물 건립 추진
체육진흥과장	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사업소내 복무단속 및 보안관리 ○ 문서수발 및 직인 관리 ○ 예산 및 회계, 경리, 용도와 재산관리 ○ 시설내 청원경찰 복무관리 ○ 주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관리 및 운영 ○ 체육행사 및 경기관리, 경기용품 관리 ○ 입장권 관리 ○ 입장권 검인 관리 ○ 입장료, 사용료등 제반 수입 업무 ○ 체육시설물의 사용 허가 ○ 벚꽃맞이 행사 지원 ○ 월명체육관, 관리 및 운영 ○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내외 주변 청소 ○ 궁도장 관리업무 ○ 공원내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일정규모 : 정식인정 대회경기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경기장) ○ 기타 소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체육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수립 발굴 추진 ○ 전국(국제)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지원 ○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감독 ○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공공체육시설의 지도감독 ○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공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 장애인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사항 ○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기타체육시설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공공 체육시설 비품 및 재산 관리 ○ 체육시설 설비 ○ 각 체육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 전기 기계설비 분야 보수 ○ 행사 및 경기진행 관리 협조 ○ 부지내 녹화 및 조경관리
	국민체육센터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주요사업입안 및 일반서무 ○ 이용객 보건 및 안전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운영 및 관리 ○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회계 업무 ○ 일반 행정 및 물품 관리 ○ 고압전기 안전관리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 냉난방등 기계 소방안전 관리 ○ 건축물(7개소) 유지보수 및 관리 ○ 직원 상벌 및 복무등 과내 인사관리 ○ 보안관리 및 당직관리 ○ 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록물 및 공인 관리 ○ 자유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청사 내외곽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대회의실, 세미나실, 교양문화실 등 시설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건립 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도서진흥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자료 확충의 기본계획 수립 ○ 독서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단행본 자료의 선정·가격조사·구입 요구 및 검수 ○ 정기간행물 자료의 선정·가격조사·구입 요구 및 검수 ○ 비도서 자료의 선정·가격조사·구입 요구 및 검수 ○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의 수증·기증 및 교환 ○ 도서관 자료의 등록·분류·편목·제적 및 폐기 ○ 장서통계 등 각종 통계 관리 ○ 도서관의 각종 문화 행사(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독서회 등) 추진 ○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자료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자료실 및 유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학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제전문자료실 및 신문보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기간행물 및 노인장애우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운영 관리 관한 사항 ○ 도서관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정보화 및 이용자 정보 격차 해소 교육 ○ 디지털자료실 및 컴퓨터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참고 봉사(독서상담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분관운영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학교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문고 등록 및 운영 지원 관련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임피채만식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월명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미성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암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미성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흥남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철새생태 관리과장	관 리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 및 일반사무 ○ 철새 축제행사 종합 추진 ○ 시설내 학습자료실 및 주 전시관 관리 ○ 시설내 보관 박제품 등 각종 전시품 관리 ○ 입장료 및 매표소 관리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역 관리 및 생태교육 ○ 철새 도래지 서식 생태 교육 및 연구 ○ 체험학습객 및 탐조객, 관광객 안내 및 교육
	시 설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안전점검관리 및 유지보수 ○ 철새신체탐험관, 금강조류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 사업소내 각종 시설 관리 ○ 전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부지내 조경, 인공폭포·연못 등 관리 ○ 시설 임대·사용허가 ○ 금강조류생태공원 조류사육·보호·관리 ○ 금강철새 도래지 관리 및 불법수렵 단속 ○ 인근 조수보호구역 관리 및 구난 조수 보호·치료·관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u>주민생활지원국</u></p> <p>제9조(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복지지원과장·여성아동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u>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u>,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10조(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영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u>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u>주민복지국</u></p> <p>제 9 조 (<u>주 민 복 지 국</u>) ----- -----, <u>문화청소년과장은</u>----- ----- ----- -----.</p> <p>제10조(건설교통국) ----- ----- ----- ----- ----- ----- ----- ----- ----- -----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u>-----.</p>

[별표 3]

사업소의 소장·과장·관장의 직급표(제17조 관련)

사업소명	소장	과장·소장·관장	
		직위	직급
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과장 하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예술체육사업소	지방서기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체육진흥과장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철새생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	-

【별표 4】

읍면·동장의 직급(제18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옥구읍사무소	옥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옥산면사무소	옥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회현면사무소	회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임피면사무소	임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서수면사무소	서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대야면사무소	대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개정면사무소	개정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성산면사무소	성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나포면사무소	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옥도면사무소	옥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옥서면사무소	옥서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해신동사무소	해신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월명동사무소	월명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삼학동사무소	삼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신평동사무소	신평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중앙동사무소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홍남동사무소	홍남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조촌동사무소	조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경암동사무소	경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구암동사무소	구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개정동사무소	개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수송동사무소	수송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나운1동사무소	나운1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나운2동사무소	나운2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나운3동사무소	나운3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소룡동사무소	소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미성동사무소	미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기획예산 과장	대외 협력 업무 분야	0 시 의회 운영지원 0 의회자료 제출 및 협의회 관한사항 0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0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0 의회운영 제도개선 연구등 0 의정비 관련업무 0 <u>국내거주 외국인 지원</u> 0 남북교류 업무추진 0 명예시민 업무 0 국내자매도시 관련업무 0 재경향우회 관련업무 0 NGO 관리	기획예산 과장	대외 협력 업무 분야	0 시 의회 운영지원 0 의회자료 제출 및 협의회 관한사항 0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0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0 의회운영 제도개선 연구등 0 의정비 관련업무 <삭제> 0 남북교류 업무추진 0 명예시민 업무 0 국내자매도시 관련업무 0 재경향우회 관련업무 0 NGO 관리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 과장	전략 산업 업무 분야	0 자동차 관련사업 육성 지원 0 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 추진 0 지역특화 전략산업 추진 0 자동차산업 유관기관 협의 및 지원 0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물류 지원센터 시설관리	지역경제 과장	전략 산업1 업무 분야	0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 0 전략산업 종합 D/B 구축·운영 0 전략산업 시책 발굴 기획 및 사업화 0 주요기관 인적네트워크 구축·관리 0 전략산업 기업 종합지원(R&D, 마케팅 등) 0 전략산업 관련기업 R&D 기술애로 해소지원 0 전략산업 전문인력양성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0 산·학·연·관 공동협력사업 지원 0 국가 R&D공모사업 발굴 기획 및 유치 0 R&D기관 육성·협력기반 구축 지원 0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성과 확산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신설>	<신설>	<신설>	지역경제 과장	전략 산업2 업무 분야	0 자동차 관련사업 육성 지원 0 자동차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 0 자동차산업 마케팅 육성 지원 0 자동차·조선산업 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 0 자동차 관련 행사 추진 0 지역특화 전략산업 추진 0 자동차산업 유관기관 협의 및 지원 0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물류지원센터 시설관리

현 행			개 정 안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 과장	취업 노사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 근로자 복지향상 ○ 노사정협의회 운영 ○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 ○ 취업박람회 관련업무 ○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노동쟁의 지도 ○ 근로복지관 운영지도 감독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지도 ○ 공공일자리아업 추진(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 경제산업정보시스템 운영 	투자 지원과장	취업 노사 업무 분야	<현행과같음>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지역경제 과장	일자리 창출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총괄기획 및 추진 ○ 지역일자리 발굴·육성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자립형 지역일자리) ○ 사회적기업 육성 ○ 청년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컨설팅 창업 등 	<삭제>	<삭제>	<삭제>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투자 지원과	산업 인력 양성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촉진 훈련사업 ○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 기능인력 수급대책 ○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에 관한사항 	투자 지원과	인력 양성 일자리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총괄기획 및 추진 ○ 지역일자리 발굴·육성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자립형 지역일자리) ○ 사회적기업 육성 ○ 청년 실업자 대책 및 일자리컨설팅(창업 등) ○ 고용촉진 훈련사업 ○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 기능인력 수급대책 ○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에 관한사항

현행			개정안		
관외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관외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복지 기획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 3.1절, 현충일행사 ○ 부랑인시설업무 ○ 재해구호(이제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 의회 업무 관련 전반 ○ 공익근무요원 관리 ○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 <u>저출산 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 운영</u>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 ○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민생활 지원과장	복지 기획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 3.1절, 현충일행사 ○ 부랑인시설업무 ○ 재해구호(이제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 의회 업무 관련 전반 ○ 공익근무요원 관리 ○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 <u><삭제></u>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 ○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여성아동 복지과장	여성 정책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시설물 유지 관리 ○ 일반 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 여성단체 지도 육성 ○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 관리 ○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관리 ○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지원사업 ○ 국내 결혼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 여성아동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여성아동 복지과장	여성 정책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시설물 유지 관리 ○ 일반 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 여성단체 지도 육성 ○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 관리 ○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 <u><삭제></u> ○ <u><삭제></u> ○ <u><삭제></u> ○ <u><삭제></u> ○ <u><삭제></u> ○ 국내 결혼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 여성아동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관리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리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신설>	<신설>	<신설>	문화체육 과장	삶의 질 정책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 종합 계획수립 및 총괄운영 ○ 삶의 질 향상 기획·평가 및 시책 발굴 추진 ○ 삶의 질 정책 TF팀 구성 운영 ○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 구축 ○ 주민밀착형 소규모 문화시설 확충 ○ 문화복지 주요시책 발굴 ○ 슬로시티 관련 기획·조정·평가 ○ 슬로시티 중장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 슬로산업 관련 자위화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슬로시티 연맹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운영지표 개발 ○ 슬로시티 체험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주민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슬로시티 지정 지역브랜드화 작업 및 인증시범사업
여성아동 복지과장	청소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 시설 신고 처리 및 시설위탁 운영 관리 ○ 청소년 단체 지도관리 및 지도감독 ○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 ○ 각종 청소년 복지 행사 개최 ○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 ○ 비행 청소년 선도 보호 ○ 청소년 복지 진흥업무 전반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 과태료 처분 및 행정소송 처리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장운영 ○ 기타 청소년 보호 위원회 권한중 위임되는 사항 ○ 소년수련시설 허가관련 신청접수협약 검토허가 변경허가 ○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신고 및 폐지제한 ○ 수련시설등록관련 신청접수협약의 검토·등록·변경등록 ○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기록·통보 ○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 명령 ○ 수련시설의 보험 가입 ○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및 감독 	문화 청소년 과장	청소년 업무분야	<현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안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신설>	<신설>	<신설>	여성아동 복지과장	출산 다문화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 출산장려 중·장기 계획수립 운영 ○ 출산장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출산장려 홍보,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 출산장려 T/F팀 구성 및 운영 ○ 출산장려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산 대책관련 시책 개발추진 및 홍보 ○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구성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출산 정책에 대한 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관련 축제 및 행사 지원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 및 관리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현황 통계 구축 조사 ○ 그밖에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예술의 전당 관리 과장	시설 운영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예산, 회계, 계약, 경리, 용도와 재산 관리 ○ 지출, 급여, 세입세출외 현금, 세외수입, 물품관리, 공공요금, 공공성경비, 일용인부 관리 ○ 주차장 운영,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전기, 소방,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냉방, 난방, 급수, 기계 시설관리 ○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리 ○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복무지도 총괄

현 행			개 정 안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신설>	<신설>	<신설>	예술의 전당 관리 과장	공연 기획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전시 기획 및 교육 총괄 ○ 홈페이지 제작, 관리 ○ 공연홍보 및 마케팅 ○ 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시설 사용료 징수, 대표업무 등 제반수입 관리 ○ 공연장, 전시관 대관 및 사용허가 업무 ○ 무대시설 및 전시실 등 시설관리 ○ 무대기계 운용 및 관리 ○ 무대조명 운용 및 장비 ○ 무대음향 운용 및 장비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문화 체육 과장	예술 진흥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술의 진흥 ○ 지방예술 진흥업무 기획 ○ 지방 예술단체 및 동호회 지원 ○ 각종 예술행사 지원 ○ 시립예술단 운영 전반 ○ 예총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 예술관람 시설물 건립 추진 	예술의 전당 관리 과장	예술 진흥 업무 분야	<현행과같음>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체육 시설 관리 과장	체육 진흥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수립 발굴 추진 ○ 전국(국제)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지원 ○ 체육화생환체육협의회 지도감독 ○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공공체육시설의 지도감독 ○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공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 장애인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사항 ○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기타체육시설등에 관한 사항 	체육 진흥 과장	체육 진흥 업무 분야	<현행과같음>

현행			개정안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시민 문화회관 관리과장	관리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내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문화 예술의 보급 ○ 예산, 회계, 경리, 용도와 재산 관리 ○ 문화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 기타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시설 사용료 징수등 제반수입 업무 ○ 입장권 검인 관리 ○ 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시설물 사용 허가 ○ 시민문화회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시민 문화회관 관리과장	문학관 업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관자료의 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 ○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 채만식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별표 3]

사업소의 소장·과장·관장의 직급표 (제17조 관련)

사업소명	소 장	과 장 · 소 장 · 관 장	
		직 위	직 급
수도 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시설 관리 사업소	지방서기관	체육시설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문화회관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철새생태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별표 3]

사업소의 소장·과장·관장의 직급표 (제17조 관련)

사업소명	소 장	과 장 · 소 장 · 관 장	
		직 위	직 급
수도 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예술 체육 사업소	지방서기관	예술의전당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철새 생태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p> <p>읍·면·동장의 직급(제18조 관련)</p>	<p>【별표 4】</p> <p>읍·면·동장의 직급(제1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기 관 별</th> <th style="width: 33%;">직 위</th> <th style="width: 33%;">직 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수면 사무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수면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생략)			서수면 사무소	서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기 관 별</th> <th style="width: 33%;">직 위</th> <th style="width: 33%;">직 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수면 사무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수면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 관 별	직 위	직 급	(현행과 같음)			서수면 사무소	서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현행과 같음)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생략)																									
서수면 사무소	서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생략)																									
기 관 별	직 위	직 급																							
(현행과 같음)																									
서수면 사무소	서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현행과 같음)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12-4호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06.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및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내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소지자를 대행업 신청 가능하도록 행정제도 개선 (안 제3조)
- 나.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시 지정기간 연장조항 삭제
- 다. 대행업 지정기준 개정 (안 제4조 별표1)
 - 1) 지정기준을 현장처리 능력에 맞도록 장비 및 기준 보완 (안 제4조 별표1)
 - 2) 기계화시공에 따른 시공능력 향상으로 업소당 수전수 조정

(안 제4조 제2항)

3)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 할 경우 공개추첨하여 지정할수 있는 항목 신설(안 제4조 제3항)

라. 대행업 결격사유에 군산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추가
(안 제5조 제5항)

마. 지정기간을 5년을 3년으로 지정기간 단축 변경(안 제6조제1항)

바. 지정교부시 교부대장 및 대행업체카드 관리 양식 추가(안 별지제5호, 별지제6호)

사. 보증금 예치금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8조 제1항)

아. 군산시장의 시공기술자 시험제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제도개선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자. 기타 별표, 별지 양식 변경

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 063-450-4532, 팩스 063-452-81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 급수계(전화 063-450-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개정령안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기능사2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전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소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4.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관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

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영업용자본명세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6. 공사용장비기구소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7. 영업소 건축물이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8.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4조(지정기준 및 제한)

1.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산시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대
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써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2,000전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시한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 할 경우
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제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군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정기간)

1.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시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교부)

1.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 예치)

1.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다.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한다.

2. 대행업자가 시공한 흠이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케하고 전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4. 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

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1.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시공기술자의 배치)

1.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

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가. 군산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제5조제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3. 급수공사 현장에는 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시공승인한 사항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1.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나.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다.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라.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마.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별지제7호서식)

2. 전항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 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회 1개월, 2회 2개월, 3회6개월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이 규칙에 정한 제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제1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8조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대행업자 지정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산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17조(인가 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있다.

제18조(보수책임)

1.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자격취소) 시장은 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
제20조(청문) 제16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이규칙에 의한 시공기술자로 본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영업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의 유효 지정기간은 만료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대행업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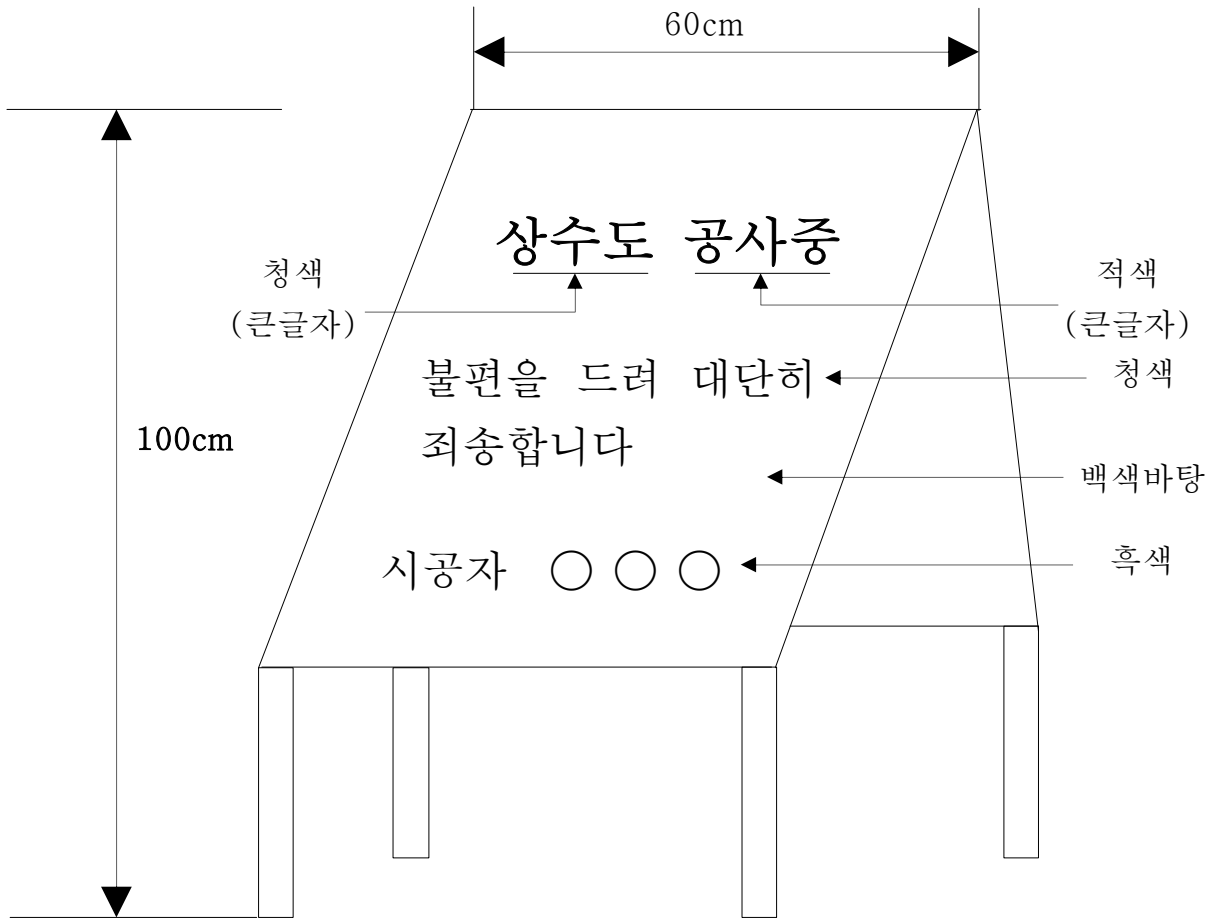
구 분	법 인	비 고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 확보	
자본금	-불입자본금 20,000,000원이상	
보유장비	-소형브레이카 2.7m ³ /분 이상 1대이상 -양수기펌프 40mm 2대이상 -발전기 5Kw 1대이상 -고속절단기 1대이상 -PE 및 PVC관 카타기 1대이상 -람마 80Kg 1대이상 -콤팩트 1대이상 -포장절단기 1대이상 -작업차량 1.0톤이상 1대이상 -굴삭기 0.1m ³ 이상 1대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각1개이상	
기타사항	1. 영업소 또는 사무실 20m ² 이상 2. 통신장비 -전용전화 1대이상 -휴대전화 1대이상 3. 안전헬스 10개이상 4. 라바콘(원뿔형) 야광 20개이상 5. 공사안내간판 -소형 2개이상 -대형 1개이상 6. 야간 경광등 2개이상 7. 해빙기 1대이상	

※ 시공기술자 인정 조건(선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 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 기존 군산시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취득자

[별표 2]

공사안내판(안)



[별지1호서식]

<h3>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h3>					
신 청 인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소 재 지	
시공기술자 자격종목					종업원 수
급수공사 의 영업종목					자 본 금
<p>위와 같이 군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군 산 시 장 귀하</p>					
<p>붙임 1.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p> <p>2. 사업자등록증(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업 면허) 사본</p> <p>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p> <p>4. 영업용 자본명세표(개인 재산증명서)</p> <p>5. 종업원 신고서</p> <p>6. 공사용 장비·기구 보유명세서</p> <p>7. 영업소 건축물이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p>					

[별지2호서식]

종업원 신고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고용월일	시공기술 자 격	실무경력	비 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장 비 · 기 구 명 세 서

기 구 명	규 격	기본수량	용도	보유량	비 고
- 소형브레이카		1대	포장파쇄		2.7m ³ /분
- 양수기펌프		2대	양수작업		40mm
- 발 전 기		1조	전기공구사용		1. 5KW
- 고속절단기		1대	강관절단		
- PE및PVC관카타기		1대	2. PE및PVC관 절단		3. 80kg
- 램 마	4.	1대	다짐기		
5. - 콤팩트		1대	다짐기		
- 포장절단기		1대	포장절단		
- 작업차량	6.	1대	운반	7.	
8. - 굴삭기	9.	1대	굴착 및 운반		
10. - 새들천공기	11. 15~50mm	1조	원관천공		
12. - 안전헬스	13.	10개	공사현장설치		
14. - 라바콘(원뿔형)	15.	20개	“		
16. - 공사안내판	17.	3조	“		
18. - 야간경광등	19.	2개	“		
20. - 해빙기	21.	1대	결빙관 해빙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영업장소 :

상 호 :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신고사항】

신고년월일	구 분	신고내용	처 리 담당자인	확 인

[별지 5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교부대장

결 제			교 부 년월일	지 정 번호	영업장 소재지	상 호	성 명	생년 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과 장	계 장	주무관									

[별지 6호서식](전면)

급수공사대행업체카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소	지정년월일	지정번호	상호	
	한자		법인등록번호						
사 진	재 산		사 무 실		전 화		영업장소재지		기능공수
	대지	㎡	원	자 가	차 가				
	건물	㎡	원						
	평가액			원	면적 ㎡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소 재 지 변 경				
소형브레이카					주소	변경년월일	신고년월일	확인	비 고
양기기펌프									
발전기									
고속절단기									
PE및PVC관 카타기					휴 폐 업 신 고				
람마	22.				휴폐업기간	사 유	신고년월일	확인	비 고
콤팩트									
포장절단기									
23. 작업차량	24.				대 행 업 위 반 처 분				
25. 굴삭기	26.				처 분 일 차	처분사유	정지기간	확인	비 고
27. 새들천공기	28.								
29. 해빙기	30.								

[별지 6호서식](후면)

현 장 대 리 인

성 명	자격번호	취업년월일	확인	해고연 월일	확인	성명	자격번호	취업년월일	확인	해고일자	확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군산시 고시 제2012-66호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8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 나. 명 칭 : 군산대학교 시설확충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면적(m ²)		실시계획인가				비 고
				기 시행		금회 시행		
		건축면적	연면적	건 축	연면적	건 축	연면적	
총괄	군산대학교	80,351	249,270	65,303.84	203,274.0 3	66,645.29	208,746.8 4	
금회 신청 부분	산학협력관	1,342	5,473	-	-	1,341.45	5,472.81	
	계	1,342	5,473			1,341.45	5,472.81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대학교 총장 채정룡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1993. 01 ~ 2012. 12. 31
 변경 1993. 01 ~ 2020.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실음 생략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0호선 외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8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산북동 1-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0호선 외2개노선)사업
 - 나. 명 치 : 하나리움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노선명	시설결정		기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고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도 로	중로2-70	15	40	8	40	7	40	274.1	7	40	274.1	확폭구간개설
	소로2-360	8~12	1,097	8	1,097	4	217	868	4	284	1,074	확폭구간개설
	소로2-358	8~14	400	8	400	3~6	340	1,485	-	-	-	노선명 변경
	중로3-66	11~14	400	8	400	-	-	-	3~6	400	1,803	확폭구간개설
계			1,537		1,537		597	2,627.1		724	3,151.1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94-1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하나건설 대표 박안수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 ~ 2014. 1.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69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제 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의거 하천점용연장허가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재난관리과 450-44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일

- 1. 하 천 명 : 국가하천(만경강 및 금강)
- 2. 점용자 성명 및 주소 : 붙임조서 참조
- 3. 점용의 목적 : 토지(경작)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붙임조서 참조
- 5. 점용허가 유효기간 : 2012. 05. 22 ~ 2017. 05. 21(5년간)
- 6. 열람 방법 : 군산시 재난관리과 개별열람 또는(전화 063-450-4494) 문의

하천점.사용허가 기간연장 조서

연번	점용일자	점용면적 (m ²)	하천명	지목	물건지주소
		712,175			323건
1	2012.05.22~2017.05.21	11.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10번지
2	2012.05.22~2017.05.21	27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15번지
3	2012.05.22~2017.05.21	8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16번지
4	2012.05.22~2017.05.21	59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16번지 1호
5	2012.05.22~2017.05.21	2,37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16번지 2호
6	2012.05.22~2017.05.21	143.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17번지
7	2012.05.22~2017.05.21	9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18번지
8	2012.05.22~2017.05.21	15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42번지
9	2012.05.22~2017.05.21	5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62번지
10	2012.05.22~2017.05.21	27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63번지
11	2012.05.22~2017.05.21	3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64번지
12	2012.05.22~2017.05.21	24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65번지
13	2012.05.22~2017.05.21	41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66번지
14	2012.05.22~2017.05.21	5,0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67번지
15	2012.05.22~2017.05.21	4,22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68번지
16	2012.05.22~2017.05.21	3,31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69번지
17	2012.05.22~2017.05.21	4,45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0번지
18	2012.05.22~2017.05.21	3,66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1번지
19	2012.05.22~2017.05.21	93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2번지
20	2012.05.22~2017.05.21	2,87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3번지
21	2012.05.22~2017.05.21	3,57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4번지
22	2012.05.22~2017.05.21	99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5번지
23	2012.05.22~2017.05.21	86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6번지
24	2012.05.22~2017.05.21	63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7번지
25	2012.05.22~2017.05.21	14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78번지
26	2012.05.22~2017.05.21	40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82번지
27	2012.05.22~2017.05.21	5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83번지
28	2012.05.22~2017.05.21	7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85번지
29	2012.05.22~2017.05.21	15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86번지
30	2012.05.22~2017.05.21	7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가 87번지
31	2012.05.22~2017.05.21	6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가 101번지
32	2012.05.22~2017.05.21	38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가 102번지

33	2012.05.22~2017.05.21	1,40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03번지
34	2012.05.22~2017.05.21	3,15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04번지
35	2012.05.22~2017.05.21	16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05번지
36	2012.05.22~2017.05.21	38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06번지
37	2012.05.22~2017.05.21	2,07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07번지
38	2012.05.22~2017.05.21	134.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08번지
39	2012.05.22~2017.05.21	16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09번지
40	2012.05.22~2017.05.21	3,75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0번지
41	2012.05.22~2017.05.21	16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0번지
42	2012.05.22~2017.05.21	584.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1번지
43	2012.05.22~2017.05.21	36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2번지
44	2012.05.22~2017.05.21	8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3번지
45	2012.05.22~2017.05.21	46.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5번지
46	2012.05.22~2017.05.21	33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6번지
47	2012.05.22~2017.05.21	38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7번지
48	2012.05.22~2017.05.21	8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8번지
49	2012.05.22~2017.05.21	1,65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9번지
50	2012.05.22~2017.05.21	3,72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1번지
51	2012.05.22~2017.05.21	1,86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0번지
52	2012.05.22~2017.05.21	94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1번지
53	2012.05.22~2017.05.21	47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2번지
54	2012.05.22~2017.05.21	5,90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3번지
55	2012.05.22~2017.05.21	4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4번지
56	2012.05.22~2017.05.21	47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5번지
57	2012.05.22~2017.05.21	65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6번지
58	2012.05.22~2017.05.21	19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7번지
59	2012.05.22~2017.05.21	6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8번지
60	2012.05.22~2017.05.21	84.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29번지
61	2012.05.22~2017.05.21	106.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0번지
62	2012.05.22~2017.05.21	33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1번지
63	2012.05.22~2017.05.21	6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2번지
64	2012.05.22~2017.05.21	1,23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3번지
65	2012.05.22~2017.05.21	1,07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4번지
66	2012.05.22~2017.05.21	1,56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5번지
67	2012.05.22~2017.05.21	1,02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6번지
68	2012.05.22~2017.05.21	2,09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7번지
69	2012.05.22~2017.05.21	1,14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8번지

70	2012.05.22~2017.05.21	24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9번지
71	2012.05.22~2017.05.21	5,865.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3번지
72	2012.05.22~2017.05.21	2,65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0번지
73	2012.05.22~2017.05.21	163.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1번지
74	2012.05.22~2017.05.21	436.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2번지
75	2012.05.22~2017.05.21	17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3번지
76	2012.05.22~2017.05.21	22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4번지
77	2012.05.22~2017.05.21	16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5번지
78	2012.05.22~2017.05.21	20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6번지
79	2012.05.22~2017.05.21	74.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7번지
80	2012.05.22~2017.05.21	25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8번지
81	2012.05.22~2017.05.21	2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9번지
82	2012.05.22~2017.05.21	3,38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4번지
83	2012.05.22~2017.05.21	86.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0번지
84	2012.05.22~2017.05.21	11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1번지
85	2012.05.22~2017.05.21	1,84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2번지
86	2012.05.22~2017.05.21	4,73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3번지
87	2012.05.22~2017.05.21	1,31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4번지
88	2012.05.22~2017.05.21	1,52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5번지
89	2012.05.22~2017.05.21	3,63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6번지
90	2012.05.22~2017.05.21	1,28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8번지
91	2012.05.22~2017.05.21	4,15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5번지
92	2012.05.22~2017.05.21	6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66번지
93	2012.05.22~2017.05.21	16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67번지
94	2012.05.22~2017.05.21	1,08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6번지
95	2012.05.22~2017.05.21	3,07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70번지
96	2012.05.22~2017.05.21	4,45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7번지
97	2012.05.22~2017.05.21	4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86번지
98	2012.05.22~2017.05.21	2,07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88번지
99	2012.05.22~2017.05.21	2,64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8번지
100	2012.05.22~2017.05.21	73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90번지
101	2012.05.22~2017.05.21	14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91번지
102	2012.05.22~2017.05.21	3,17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93번지
103	2012.05.22~2017.05.21	2,69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9번지
104	2012.05.22~2017.05.21	73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1번지
105	2012.05.22~2017.05.21	4,97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0번지
106	2012.05.22~2017.05.21	1,77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1번지
107	2012.05.22~2017.05.21	19,977.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2번지
108	2012.05.22~2017.05.21	1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3번지

109	2012.05.22~2017.05.21	83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4번지
110	2012.05.22~2017.05.21	2,93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5번지
111	2012.05.22~2017.05.21	1,80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6번지
112	2012.05.22~2017.05.21	2,38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7번지
113	2012.05.22~2017.05.21	3,06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8번지
114	2012.05.22~2017.05.21	3,86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9번지
115	2012.05.22~2017.05.21	1,80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2번지
116	2012.05.22~2017.05.21	3,77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30번지
117	2012.05.22~2017.05.21	1,75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3번지
118	2012.05.22~2017.05.21	4,01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46번지
119	2012.05.22~2017.05.21	14,55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47번지
120	2012.05.22~2017.05.21	4,78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48번지
121	2012.05.22~2017.05.21	4,567.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49번지
122	2012.05.22~2017.05.21	1,945.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4번지
123	2012.05.22~2017.05.21	3,477.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0번지
124	2012.05.22~2017.05.21	2,99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1번지
125	2012.05.22~2017.05.21	77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3번지
126	2012.05.22~2017.05.21	327.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4번지
127	2012.05.22~2017.05.21	2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5번지
128	2012.05.22~2017.05.21	6,82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6번지
129	2012.05.22~2017.05.21	3,38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8번지
130	2012.05.22~2017.05.21	3,54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9번지
131	2012.05.22~2017.05.21	4,09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5번지
132	2012.05.22~2017.05.21	5,03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0번지
133	2012.05.22~2017.05.21	3,28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1번지
134	2012.05.22~2017.05.21	4,16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2번지
135	2012.05.22~2017.05.21	10,805.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3번지
136	2012.05.22~2017.05.21	3,43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4번지
137	2012.05.22~2017.05.21	4,46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5번지
138	2012.05.22~2017.05.21	6,37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6번지
139	2012.05.22~2017.05.21	4,01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8번지
140	2012.05.22~2017.05.21	3,727.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9번지
141	2012.05.22~2017.05.21	2,71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6번지
142	2012.05.22~2017.05.21	3,78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0번지
143	2012.05.22~2017.05.21	3,74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1번지
144	2012.05.22~2017.05.21	3,81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2번지
145	2012.05.22~2017.05.21	3,16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3번지
146	2012.05.22~2017.05.21	3,177.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4번지

147	2012.05.22~2017.05.21	3,74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5번지
148	2012.05.22~2017.05.21	9,51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6번지
149	2012.05.22~2017.05.21	8,07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7번지
150	2012.05.22~2017.05.21	2,5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8번지
151	2012.05.22~2017.05.21	3,78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9번지
152	2012.05.22~2017.05.21	2,415.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7번지
153	2012.05.22~2017.05.21	2,24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0번지
154	2012.05.22~2017.05.21	3,58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1번지
155	2012.05.22~2017.05.21	6,72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2번지
156	2012.05.22~2017.05.21	2,39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3번지
157	2012.05.22~2017.05.21	1,12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4번지
158	2012.05.22~2017.05.21	7,18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5번지
159	2012.05.22~2017.05.21	4,00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6번지
160	2012.05.22~2017.05.21	2,24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7번지
161	2012.05.22~2017.05.21	3,547.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8번지
162	2012.05.22~2017.05.21	5,30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9번지
163	2012.05.22~2017.05.21	1,72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8번지
164	2012.05.22~2017.05.21	4,605.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0번지
165	2012.05.22~2017.05.21	2,20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1번지
166	2012.05.22~2017.05.21	3,39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2번지
167	2012.05.22~2017.05.21	3,05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3번지
168	2012.05.22~2017.05.21	3,77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4번지
169	2012.05.22~2017.05.21	12,54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5번지
170	2012.05.22~2017.05.21	5,48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6번지
171	2012.05.22~2017.05.21	1,03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7번지
172	2012.05.22~2017.05.21	2,24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8번지
173	2012.05.22~2017.05.21	3,98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9번지
174	2012.05.22~2017.05.21	5,33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 9번지
175	2012.05.22~2017.05.21	126.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113번지1호
176	2012.05.22~2017.05.21	23.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141번지1호
177	2012.05.22~2017.05.21	5,11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57번지
178	2012.05.22~2017.05.21	1,20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59번지
179	2012.05.22~2017.05.21	5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60번지
180	2012.05.22~2017.05.21	17.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61번지
181	2012.05.22~2017.05.21	48.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62번지
182	2012.05.22~2017.05.21	104.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63번지
183	2012.05.22~2017.05.21	194.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64번지
184	2012.05.22~2017.05.21	30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65번지

185	2012.05.22~2017.05.21	276.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68번지
186	2012.05.22~2017.05.21	1,90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69번지
187	2012.05.22~2017.05.21	3,85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1번지
188	2012.05.22~2017.05.21	1,69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2번지
189	2012.05.22~2017.05.21	2,63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3번지
190	2012.05.22~2017.05.21	2,01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4번지
191	2012.05.22~2017.05.21	3,92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5번지
192	2012.05.22~2017.05.21	276.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6번지
193	2012.05.22~2017.05.21	7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7번지
194	2012.05.22~2017.05.21	6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8번지
195	2012.05.22~2017.05.21	41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79번지
196	2012.05.22~2017.05.21	186.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80번지
197	2012.05.22~2017.05.21	3,35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81번지
198	2012.05.22~2017.05.21	2,88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82번지
199	2012.05.22~2017.05.21	89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89번지
200	2012.05.22~2017.05.21	194.00	만경강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92번지
201	2012.05.22~2017.05.21	2,15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94번지
202	2012.05.22~2017.05.21	5,23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95번지
203	2012.05.22~2017.05.21	4,75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96번지
204	2012.05.22~2017.05.21	1,27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197번지
205	2012.05.22~2017.05.21	3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240번지
206	2012.05.22~2017.05.21	242.00	만경강	대지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242번지
207	2012.05.22~2017.05.21	182.00	만경강	대지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243번지
208	2012.05.22~2017.05.21	54.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244번지
209	2012.05.22~2017.05.21	48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249번지
210	2012.05.22~2017.05.21	6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복교리가251번지
211	2012.05.22~2017.05.21	4,14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77번지1호
212	2012.05.22~2017.05.21	2,61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가77번지2호
213	2012.05.22~2017.05.21	1,72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1번지
214	2012.05.22~2017.05.21	147.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2번지
215	2012.05.22~2017.05.21	3,75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3번지
216	2012.05.22~2017.05.21	3,72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4번지
217	2012.05.22~2017.05.21	3,11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5번지
218	2012.05.22~2017.05.21	27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6번지
219	2012.05.22~2017.05.21	3,353.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7번지
220	2012.05.22~2017.05.21	2,27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8번지
221	2012.05.22~2017.05.21	51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지경리가9번지
222	2012.05.22~2017.05.21	3,94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번지

223	2012.05.22~2017.05.21	4,67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번지
224	2012.05.22~2017.05.21	4,08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번지
225	2012.05.22~2017.05.21	6,02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번지
226	2012.05.22~2017.05.21	3,78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번지
227	2012.05.22~2017.05.21	4,37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6번지
228	2012.05.22~2017.05.21	3,88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7번지
229	2012.05.22~2017.05.21	3,80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8번지
230	2012.05.22~2017.05.21	3,95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9번지
231	2012.05.22~2017.05.21	2,76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0번지
232	2012.05.22~2017.05.21	4,04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1번지
233	2012.05.22~2017.05.21	1,93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2번지
234	2012.05.22~2017.05.21	2,7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3번지
235	2012.05.22~2017.05.21	3,56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4번지
236	2012.05.22~2017.05.21	3,87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5번지
237	2012.05.22~2017.05.21	3,82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6번지
238	2012.05.22~2017.05.21	1,27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7번지
239	2012.05.22~2017.05.21	2,21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8번지
240	2012.05.22~2017.05.21	2,55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19번지
241	2012.05.22~2017.05.21	8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0번지
242	2012.05.22~2017.05.21	3,88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1번지
243	2012.05.22~2017.05.21	3,77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2번지
244	2012.05.22~2017.05.21	2,055.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3번지
245	2012.05.22~2017.05.21	1,33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4번지
246	2012.05.22~2017.05.21	6,96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5번지
247	2012.05.22~2017.05.21	1,17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6번지
248	2012.05.22~2017.05.21	8,55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27번지
249	2012.05.22~2017.05.21	1,02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0번지
250	2012.05.22~2017.05.21	3,71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1번지
251	2012.05.22~2017.05.21	3,25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2번지
252	2012.05.22~2017.05.21	1,32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3번지
253	2012.05.22~2017.05.21	6,06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4번지
254	2012.05.22~2017.05.21	3,00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5번지
255	2012.05.22~2017.05.21	2,87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6번지
256	2012.05.22~2017.05.21	40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7번지
257	2012.05.22~2017.05.21	41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8번지
258	2012.05.22~2017.05.21	6,34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39번지
259	2012.05.22~2017.05.21	1,08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0번지
260	2012.05.22~2017.05.21	2,17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1번지

261	2012.05.22~2017.05.21	1,53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1번지1호
262	2012.05.22~2017.05.21	3,10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2번지
263	2012.05.22~2017.05.21	1,72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3번지
264	2012.05.22~2017.05.21	1,22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4번지
265	2012.05.22~2017.05.21	39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5번지
266	2012.05.22~2017.05.21	1,27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6번지
267	2012.05.22~2017.05.21	70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7번지
268	2012.05.22~2017.05.21	53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48번지
269	2012.05.22~2017.05.21	91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1번지
270	2012.05.22~2017.05.21	20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2번지
271	2012.05.22~2017.05.21	38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3번지
272	2012.05.22~2017.05.21	1,32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4번지
273	2012.05.22~2017.05.21	1,09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5번지
274	2012.05.22~2017.05.21	43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6번지
275	2012.05.22~2017.05.21	1,405.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7번지
276	2012.05.22~2017.05.21	21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8번지
277	2012.05.22~2017.05.21	19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59번지
278	2012.05.22~2017.05.21	2,06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60번지
279	2012.05.22~2017.05.21	70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62번지
280	2012.05.22~2017.05.21	3,05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63번지
281	2012.05.22~2017.05.21	3,13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64번지
282	2012.05.22~2017.05.21	3,19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66번지
283	2012.05.22~2017.05.21	79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69번지
284	2012.05.22~2017.05.21	2,86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74번지
285	2012.05.22~2017.05.21	647.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75번지
286	2012.05.22~2017.05.21	4,0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76번지
287	2012.05.22~2017.05.21	3,10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77번지
288	2012.05.22~2017.05.21	3,241.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78번지
289	2012.05.22~2017.05.21	4,36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79번지
290	2012.05.22~2017.05.21	4,17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80번지
291	2012.05.22~2017.05.21	4,624.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83번지
292	2012.05.22~2017.05.21	312.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84번지
293	2012.05.22~2017.05.21	7,05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85번지
294	2012.05.22~2017.05.21	3,71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87번지
295	2012.05.22~2017.05.21	2,198.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가 89번지
296	2012.05.22~2017.05.21	157.00	만경강	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1번지
297	2012.05.22~2017.05.21	24.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2번지
298	2012.05.22~2017.05.21	299.00	만경강	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3번지

299	2012.05.22~2017.05.21	2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4번지
300	2012.05.22~2017.05.21	121.00	만경강	잡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5번지
301	2012.05.22~2017.05.21	111.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6번지
302	2012.05.22~2017.05.21	93.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7번지
303	2012.05.22~2017.05.21	519.00	만경강	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8번지
304	2012.05.22~2017.05.21	111.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9번지
305	2012.05.22~2017.05.21	51.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10번지
306	2012.05.22~2017.05.21	3.00	만경강	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11번지
307	2012.05.22~2017.05.21	48.00	만경강	대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가 12번지
308	2012.05.22~2017.05.21	27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가 1번지
309	2012.05.22~2017.05.21	4,136.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가 2번지
310	2012.05.22~2017.05.21	1,509.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가 3번지
311	2012.05.22~2017.05.21	160.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가 4번지
312	2012.05.22~2017.05.21	242.00	만경강	전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가 5번지
313	2012.05.22~2017.05.21	4,570.00	만경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가 6번지
314	2012.05.22~2017.05.21	235.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가3번지
315	2012.05.22~2017.05.21	96.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가4번지
316	2012.05.22~2017.05.21	234.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가5번지
317	2012.05.22~2017.05.21	1,078.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가6번지
318	2012.05.22~2017.05.21	231.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가7번지
319	2012.05.22~2017.05.21	806.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가8번지
320	2012.05.22~2017.05.21	1,068.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가9번지
321	2012.05.22~2017.05.21	1,065.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가10번지
322	2012.05.22~2017.05.21	6,127.00	금강	답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옥곡리가1번지(923-145호)
323	2012.05.22~2017.05.21	851.00	금강	답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곡리 가1번지(923-143호)

군산시 고시 제2012-70호

군산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2 - 139(2012.6.15)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군산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15일

1.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중앙동 등 시가지 중심부 조촌, 경장, 미장, 경암	건축물 주요구조부 및 외벽 내화구조로 제한	2,360,000	전북고시 제136호 1987.10.31	
변경	㉠	방화지구	중앙동 등 시가지 중심부 조촌, 경장, 미장, 경암	"	2,343,730	-	감)16,270㎡

2. 군산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 관련도면은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0-44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2-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6. 13.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산북동 하나리움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회사명/대표 : (주)하나건설 / 대표 : 박안수
 - 나.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94-1번지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산북동 1-5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나. 대지면적 : 49,412.0000m²
 - 다. 건축면적 : 9,075.6607m²
 - 라. 연 면 적 : 114,861.8889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14동 10~18층, 952세대
 - 전용 59.9896m² 823세대
 - 전용 59.9845m² 129세대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업비 : 129,959,782천원
 - 아. 사업기간 : 2012. 01 ~ 2014. 02
4. 변경내용 : 아파트 기초변경(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73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15. ~ 6. 29.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4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변경 : 2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폐지 : 2건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램				

○ 관련지번 변경 : 23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12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14호선, 소로3-71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8일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62-8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14호선, 소로3-715호선)사업
 - 2) 명 칭 : 고봉리 마을연결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 선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	소로3-714	6.0	59	6.0	59	397	
로	소로2-715	6.0	69	6.0	69	517	
계			128		128	914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6. ~ 201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 2012-1267호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 공고

전라북도 고시 제2011-329호(2011.10.28)로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되어 군산시 공고 제2012-1호(2012.1.4), 군산시 공고 제2012-603호(2012.3.22) 및 군산시 공고 제2012-1024호(2012.5.11)로 환지계획 공람·공고한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조촌동 일원
3. 시행면적 : 864,295㎡
4. 시행방식 : 환지방식
5. 시 행 자 : 군산시장
6.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7. 참고사항

가) 효력발생시기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환지처분시까지

나)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같은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환지의 사용 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정지공사 미완료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 또는 수익을 부여합니다.

라) 환지계획시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금전청산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7. 16일부터 사용, 수익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마) 환지예정지는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계 및 환지확정 측량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지처분시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 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환지예정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을 할 경우에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군산시 미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나 주소지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 공고내용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및 주소불명 등 기타 사유로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2 - 1283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5.

군 산 시 장

- 1. 공인신조 및 폐기사유 : 인증기 교체 및 추가
- 2.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2. 6. 15.
- 3.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2. 6. 15.
- 4.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연번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사유
1	민원 봉사과	군산시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인증기 교체
2	민원 봉사과	군산시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인증기 추가

- 5. 폐기공인 및 인영(1점)

연번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사유
1	민원 봉사과	군산시장의인 통합민원전용		인증기 교체